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4297
----------	------

2025.6.11.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발의자: 2025. 6. 2.(월) 정희기 의원

나. 회부일: 2025. 6. 2.(월)

다. 상정일: 2025. 6. 11.(수)

- 제33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부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취지

-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유사 기능을 하나의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관계 부서 간의 협력을 극대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 위원회 설치·구성·회의·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기능(안 제9조)
- 재정적 지원(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유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여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부서 간 협력을 극대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및 조례안의 내용과 조문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부결(출석위원 7명)

- 부결사유: 중간지원 조직별로 업무가 상이하고 포괄적이며 행정이 짜놓은 프레임에 맞춰 성과를 내야하는 구조적 한계,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합의 부족, 정책 환경의 불안정, 행정과의 관계 문제, 예산 및 인력 문제, 지역별 여건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부결

6.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러 중간지원조직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유사 기능을 하나의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업 지원을 통해 관계 부서 간의 협력을 극대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기관과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란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을 연계·조정하며 공동체 발굴 및 지원·행정과 주민 간 가교·주민 역량 강화·주민 의견 대변 등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운영,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협치형중간지원조직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 1명은 시장이 하며, 위촉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양시 주민자치회의의 장
3.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4. 광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

5. 광양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장
 6. 광양시 청년센터의 장
 7.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장
 8. 광양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장
 9. 그 밖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2명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의 본질적인 변경 없이 단순한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
 2.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2명의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한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2. 시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3. 개별 중간지원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체계 강화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 및 자문
5. 중간지원조직 관련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명칭, 소재지, 구성, 역할, 운영 방식(직영 또는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